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시 △△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금○○○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파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이 사건 처분경위
 - 가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임야 1,000제곱미터 등 3 필지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양□□로부터 임차기간은 3년 임료는 연1,000,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○○. ○월 ○○구청으로부터 운동시설(골프연습장)로 건축허가와 형질변경허가 등을 포함한 사업인가를 받고 같은 해 ○월 위 공사에 착공하여 20○○. ○. ○. 이를 준공하였습니다.

나. 이에 피고는 2000. O. O. 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금〇〇〇원 상형 개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하여 같은 해 O. O. 금〇〇〇원의 개발부담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.

2.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

가. 개요

이 사건 개발이익이 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.

나. 개발이익의 귀속여부에 대하여

토지가액의 증가로 인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에,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임차기간 중에 토지가액의 증가로인한 이익을 누렸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, 그 개발이익이 임차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위 토지가액 증가분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. 따라서 위 토지가액 증가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 부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.

3. 결론

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3년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동안 임차하여 위 건설사업을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, 원고에게 이사건 개발이익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이를 취소하고자 이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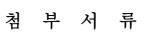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임대차계약서 사본

1. 갑 제2호증

사업인가서 사본





1. 위 각 입증방법1통1.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통1. 소장부본1통1. 납부서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○ ○ 행 정 법 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 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